

조사기관 등록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5일
------	------	----------
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소재지	연락처 (팩스번호)
	(우편번호)	

신청내용	기관 유형	☐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☐ 「고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☐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☐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
	기관 종류 (복수선택 가능)	☐ 육상지표조사기관 ☐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☐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☐ 수중지표조사기관 ☐ 수중발굴조사기관

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. 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 3. 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(국민연금·국민건강보험·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) 1부. 4.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. 5.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1부.
------	---